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87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876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소914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곤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5. 2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소9146 판결

주문

-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각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8. 7. 4. 고양시 덕양구 D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8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분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8. 5. 9. 이 사건 토지 중 1/16 지분을 E(피고의 부친)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권자이다.

다. 한편, E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2006년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임차인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와 그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부터 2022. 5.경까지 F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매월 임료를 지급받아 합계 3,36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고려함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부당이득 금액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7. 4.부터 피고가 임료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2022. 5.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각 180만 원씩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차인 F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E과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G문중 소유의 토지로서 1980. 11. 20.경 종원 8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E은 위 8인 중 1인이었던 부친 H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이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G문중 선산 관리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0년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가 2006. 7. 6. F에게 이를 임대한 점, ③ E은 임대를 시작한 이래 수년간 본인 명의 계좌로 임료를 받아오다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료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임료를 선산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임대인은 피고가 아니라 E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권리자는 아닌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거나 그로부터 배타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정욱도, 판사 정우석

별지